

수신 노인복지시설장 귀하

(경유)

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 조사 적극 협조 요청

1.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-13868(2024.8.2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와 함께 시설 내 학대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(16건^{'21년} → 68건^{'22} → 87건^{'23년})
3. 노인학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사례를 신속·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처리절차

신고접수	시설 현장조사	사례 판정	행정처분
☐ 노인보호전문기관 - 신고내용 접수 - 신고인 신분보장	☐ 노인보호전문기관, 시군, 경찰 - 시군 공무원 필수동행 필요시 경찰협조요청 - 피해노인 안전확보 - 사실증거수집 (면담, CCTV열람 등)	☐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- 법률, 의료, 복지 등 전문가 6인 이상 구성 - 학대여부 판정 - 사례판정결과 시군보고	☐ 시·군 - 사례판정결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- 행정처분 여부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고 (시군 → 도 → 보건복지부)

나. 기타 사항

- 조사 거부 및 방해 :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
(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의3, 제61조의2, 「형사소송법」 제234조)
 - '현장출입조사서' 당일 통지
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)
 - CCTV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
(「노인장기요양보험」 제33조의3, 제69조,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7).
4. 아울러, 시설장(대표)께서는 노인학대 판정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종사자(시설장 포함)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계획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